

토지이용계획확인(신청)서						처리기간
※ 굵은 선안에만 기재하기 바랍니다.						1일
신청인	성명	주소		우 (전화:)		
대상지	토지소재지			지번	지목	면적(m ²)
	시·군·구	읍·면	리·동			
확 인 내 용	1	도시관리 계획	용도지역	(제1종전용·제2종전용·제1종일반·제2종일반·제3종일반·준)주거지역 (중심·일반·근린·유통)상업지역 (전용·일반·준)공업지역 (보전·생산·자연)녹지지역 (보전·생산·계획)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		
			용도지구	(자연·수변·시가지)경관지구 (중심지·역사문화·일반)미관지구 고도지구(m 이상·이하 또는 층 이상·이하) 방화지구·방재지구 (문화자원·중요시설물·생태계)보존지구 (학교·공용·항만·공항)시설보호지구 (자연·집단)취락지구 (주거·산업·유통·관광휴양·복합)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, 위락지구, 리모델링지구 기타()		
			용도구역	개발제한구역, 시가화조정구역, 수산자원보호구역		
			도시계획시설	도로·공원·기타()		
			지구단위계획구역	(제1종, 제2종)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(), 용적률(), 층수(), 건축물용도() (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 : 과)		
			기타	개발밀도관리구역, 기반시설부담구역,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, 도시개발구역, 재개발구역, 도시계획입안사항		
2	군사시설	군사시설보호구역·해군기지구역·군용항공기지구역(비행안전구역, 기지보호구역)			해당없음	
3	농지	농업(진흥·보호)구역			해당없음	
4	산림	보전임지(생산·공익)			해당없음	
5	자연공원	공원구역·공원보호구역			해당없음	
6	수도	상수원보호구역·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·수변구역			해당없음	
7	하천	하천구역·하천예정지·연안구역·댐건설예정지역			해당없음	
8	문화재	문화재·문화재보호구역			해당없음	
9	전원개발	전원개발사업구역(발전소·변전소)·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			해당없음	
10	토지거래	허가구역			해당없음	
11	개발사업	택지개발예정지구, (국가·지방·농공)산업단지			해당없음	
12	기타				해당없음	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						수수료
년 월 일 시장·군수·구청장 인						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함

※ 유의사항

1. 이 확인서는 1필지에 대한 앞쪽의 1 내지 12의 토지이용계획사항에 대한 확인입니다.
2. 이 확인서는 부동산에 관한 주요 제한사항을 기재하였으나, 이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당해 지역이 용도지역 등의 경계부근에 위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상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확인도면을 발급하여 드립니다.
4. 군사시설란중 군용항공기지구역에 대하여는 확인원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군용항공기지구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5. 전원개발란중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발전소 및 변전소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.
6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도시관리계획확인도면
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